

○○보통검찰부

우편번호/

주소

/전화

/팩스

수신자

귀하 (우편번호,

주소

)

제 목

재판확정기록 []열람 []복사 불허가(제한) 통지

1.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·복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(전부, 일부) 불허(제한)함을 통지합니다.

불허부분*	불허이유 (「군사법원법」 제93조의2제2항 각 호)
	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
	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, 선량한 풍속,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
	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
	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
	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
	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
	⑦ 기록의 공개를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음
	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음
	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서류 또는 물건임

2.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「군사법원법」 제9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별지 사용 가능

20 . . .

○○보통검찰부

군검사

(서명 또는 인)